

감사결과

1. 총괄

감사결과 [표-2]과 같이 14건의 위법·부당사항과 4건의 모범사항이 확인되었다.

[표-2] 감사결과 현황

(단위: 건)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현지 조치
건수	금액(원)	인원										계	일반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14							3			2	2	7	7			4		

2. 처분 사항

번호	분야	제 목	비 고
1. 기획·예산 분야			
1-1	기획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계획 미수립	통 보
1-2	기획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운영 미흡	통 보
1-3	예산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부적정	기관주의
2. 경비·구조 분야			
2-1	경비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 소홀	기관주의
2-2	경비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 운영 미흡	통 보
2-3	경비	특별경비구역 및 연안해역 경비공백 최소화 방안 이행 미흡	통 보
2-4	수색	수난구호활동 민간세력에 대한 수당 지급업무 소홀	개 선
3. 해양안전 분야			
3-1	안전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 구성 미흡	통 보
3-2	안전	수상레저사업 정부수입인지 처리 미흡	권 고
4. 수사·정보 분야			
4-1	수사	민원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누락	기관주의
4-2	정보	압수물 위탁 서약서 미 징구	통 보
5. 장비관리 분야			
5-1	장비	공용차량 안전대책 이행 미흡	통 보
5-2	장비	경비함정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준 미준수	개 선
6. 오염·방제 분야			
6-1	방제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 이력 관리 미흡	권 고
7. 모범사항			
7-1	기획	현장부서와 소통을 통한 예산업무 역량 강화 추진	
7-2	안전	바다 밑 안전길잡이, 서귀포서 수중레저 안전관리 추진	
7-3	함정	주요탐재 장비 관리 Know-How 구축 추진	△△
7-4	파출소	자체정비 일상화를 통한 골든타임 사수 및 예산절감 추진	서귀포

주요 지적사항¹⁾(14건)

[1-1]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계획 미수립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인 []는 청원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
- (문제점) 서귀포해양경찰서 [] 문서등록대장 및 감사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공문이 생성·등록되지 않은 사실 확인
-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장)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통보)

[1-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미흡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 정보공개 운영규정(해양경찰청 훈령 제443호, 2019. 7. 10. 일부개정)」 제12조(구성 및 임기) 제2항에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일 기준 같은 훈령(2025. 9. 2. 시행) 제13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에는

1) 본 요약은 감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일부 문안이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 (문 제 점) 2023. 10. 31.자 「서귀포서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위원
재위촉(연임) 계획 보고(▨▨▨-9105호)」 공문을 확인한 결과, 외
부위원 위촉 운영에 있어 위 규정에 맞지 않는 외부위원 2명만을
위촉 운영하였으며, 외부위원들이 지난 2025. 10. 25.자로 연임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외부위원을 위촉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2026년 5월 종합감사 수감기간까지 관련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운영 및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사실 확인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장)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통보)

[1-3]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부적정 (기관주의)

-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6조
(예산의 전용),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III.에는 각 비목별 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

- 또한, 관서운영경비 회계서류는 「계산증명규칙」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일련의 순서에 따라 편철·보관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표-4], [표-5]과 같이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등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미흡한 사실 확인

[표-3]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연번	부서	지급일자	예산항목	건 명	수령인	지급액(원)
1	●●●	'25.04.03	일반수용비 (210-01)	2월 지로(●●●) 지급	●●●방송	7,700
2		'25.04.03		3월 지로(●●●) 지급	●●●방송	32,450
3		'25.05.26		5월 지로(●●●) 지급	●●●방송	40,150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표-4]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미비

연번	사용일자	사용처	집행목적	금액(원)	증빙서류	품의서
1	'25.12.19	000	20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 개최	600,000	×	×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표-5] 관서운영경비 증빙서류 편철 미흡 현황

연번	부서명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지적사항
1	경찰서	- 관서운영경비 편철 미흡(출납공무원 직인, 월마감 보고서, 지급대장) - 증빙서류 누락(공문, 계약 승낙사항, 납품서, 사진, 영수증 등) - 출장여비 증빙서류(출장신청서, 여비정산신청서, 항공마일리지) 미흡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서운영경비 집행 업무 철저 **(기관주의)**

(2-1) 무인비행장치 운용 · 관리 업무 소홀 (기관주의)

- **(판단기준)**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연간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소속기관은 자체 무인비행장치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임무수행시 불법조업 단속, 수색구조, 해양오염 방제 등 무인비행장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영상자료의 보관)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임무 수행 중 수집한 영상자료는 7일 이내, 출동 중 저장 불가능한 함정의 경우는 입항 후 첫 번째 집중근무일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무인비행장치 운용 현황 확인 결과, '24년 7월부터 '26년 5월까지 경비함정 3척(□□함·■■함·△△함)과 ◇◇◇의 무인기 비행 실적은 총 71회(24시간5분)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비행 영상자료를 정상적으로 저장한 실적은 총 24회(4시간 52분)에 불과하고, 함정별 빅데이터 플랫폼 내 영상 저장 위치 및 경로가 각기 다르게 저장되어 있어 비행 영상자료의 저장 및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
 - 잦은 기체 사고 및 기체결함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부서별 무인기의 소극적 활용으로 각종 임무에 활용하기 보다는 기체점검 및 교육

훈련이 다수를 차지하여 [표-6]과 같이 현장 치안 임무 활용도가 저조한 사실 확인

[표-6] 무인비행장치 임무별 운용 현황

(‘24년 7월 ~ ‘26년 5월)

구분	임무구역 순찰	불법행위 확인	수색구조	안전위해 확인	해양오염 확인	교육훈련 (장비점검,기타포함)
‘24년 운용실적	-	-	-	-	3회	-
‘25년 운용실적	9회	10회	-	-	4회	30회
‘26년 운용실적	6회	1회	-	-	-	8회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무인 비행기 영상자료 저장 경로를 일원화하고, 현장 임무 중심의 무인비행 장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기관주의)

(2-2)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 운영 미흡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사용 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제14조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입·출고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사용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기기사용법, 사용지침,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시스템 이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2024년 7월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정 이후 2026년 5월까지 [표-7]과 같이 ■■함과 ●●정을 제외한 그 외 부서는 교육·훈련 미 실시

[표-7] 경찰착용기록장치 부서별 교육·훈련 실시 현황

구분 (연도)	경찰서		파출소			합정							
	●●	◎◎	⊙⊙	目目	冊冊	□□	■	△△	▲▲	▽▽	▼▼	◎◎	
'25년	-	×	×	×	×	×	×	×	×	×	×	×	1회
'26년	×	×	×	×	×	×	1회	×	×	×	×	×	×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표-8]와 같이 일부 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정

[표-8]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 지정현황

구분		경찰서		파출소			합정						
		●●	◎◎	⊙⊙	目目	冊冊	□□	■	△△	▲▲	▽▽	▼▼	◎◎
'25년	관리책임자(정)	-	과장	팀원	팀원	팀원	부장	함장	함장	×	팀원	정장	×
	관리책임자(부)	-	계장	팀원	팀원	팀원	팀원	부장	부장	×	팀원	부장	×
'26년	관리책임자(정)	과장	과장	소장	소장	소장	함장	함장	함장	함장	함장	정장	팀장
	관리책임자(부)	계장	계장	팀장	팀장	팀장	부장	부장	부장	부장	부장	부장	팀원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 장치가 현장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세부 운영기준 마련(통보)

(2-3) 특별경비구역 및 연안해역 경비공백 최소화 방안 이행 미흡 (통보)

- (판단기준) “특별경비수역 및 연안 경비계획(서귀포서 ☒☒☒-291(24.01.18.)호)” 및 「서귀포서 복수승조원 세부운용 지침(25. 8. 22.)」에 따르면 복수 승조함정의 경비임무 교대시에는 입항 후 일정시간 합동근무를 실시한 후 교대를 해야하며 합동 근무로 인한 동부 또는 연안해역의 경비공백 발생 시 공백 최소화를 위한 통합경비 및 대체합정을 검토하도록 당초 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서귀포해양경찰서

(☒☒☒)에서는 특별경비수역 및 연안해역 복수 승조함정의 출동 지시사항 하달시 서귀포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경비공백 최소화를 위한 통합경비를 이행할 것을 지시

- (문 제 점) 복수 승조함정간 경비임무 교대 시 경비공백 최소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25년 9월부터 '26년 3월까지(약 7개월) 출동 지시서 및 종합상황실 상황보고서, 상황문자망 등을 일부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통합경비 및 파출소 지원태세 유지 등 경비공백 최소화 방안 이행 미흡 사실 확인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복수승조원 교대일 및 경비 구역별 치안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귀포 관내 경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철저(통보)

(2-4) 수난구호활동 민간세력에 대한 수당 지급업무 소홀 (개선)

- (판단기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수당의 지급)에 따르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관할 해역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지원 및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등 조난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서는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수상구조법」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제2항 및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에 따라 해상에서의 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수난구호참여자에게도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해양재난구조대 운영 지침(2025년 1월)²⁾」에 따르면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수당지급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의무 개최하여야 하며, 수당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해양재난구조대 및 수난구조참여자 수당지급 현황 점검 결과, 법정처리기한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수당지급심의회를 '25년도에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확인
-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수난구조참여자의 수당지급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연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시행(개선)

(3-1)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 구성 미흡 (통보)

- (판단기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등)에 따르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①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

2)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404('25.1.22.)호 “해양재난구조대 운용지침(하달)”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9]과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 임명·위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확인

[표-9]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연번	회의개최일	회의방법	위원구성	위원 구성 부적정 현황	
1	'24.11.8. ~ '24. 11.18	서면	7명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6급 상당 특정직공무원) 000
2	'25.11.18. ~ '25. 11.27	서면	8명	2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6급 상당 특정직공무원) 000
					제주세계유산본부 6급 000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법률 규정에 명시된 지역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여,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조치(통보)

(3-2) 수상레저사업 정부수입인지 처리 미흡(권고)

- (판단기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 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 또한, 「인지세법」 제8조, 제10조(소인)에 따라 수상레저 사업 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종합감사 기간 중 수상레저사업 관련 소인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10]과 같이 100건의 정부수입 인지를 소인처리 누락한 사실 확인

[표-10] 정부수입인지 소인처리현황

연번	수상레저사업 등록 등	소인 미처리 건	소인미처리 금액	비고
1	변경	91건	910,000원	
2	신규	6건	120,000원	
3	재개업	3건	60,000원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정부수입인지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고 소인 업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후 관리방안을 수립·시행(권고)

[4-1] 민원사건 접수 및 진행통지 누락 (기관주의)

- (판단기준) 「해양경찰 수사규칙」,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는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에서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부(민원시스템)에 등재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
-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 통지하는 경우(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중간 통지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와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의 민원시스템 등재 및 수사결과 통지여부 확인 결과, 총 28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있어, 민원시스템 미등재 및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수사 진행사항과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민원사건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수사과정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민원사건 접수 및 진행사항, 처리결과 통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기관주의)

(4-2) 압수물 위탁 서약서 미 징구 (통보)

- (판단기준) 「해양경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압수물 처리와 관리(보관) 실태 확인 결과 [표-11]과 같이 민간업체에 대해 압수물 보관 서약서 징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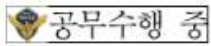
[표-11] ○○○○ 압수물 위탁 보관현황

연번	사건번호	죄명	압수물	보관 장소	서약서	비고
1	*****-****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	어구(그물) 2,630kg	** ** (****)	미 징구	보관중
2	*****-****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	어구(그물) 340kg			환부
3	*****-****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	어획물 21상자 460kg			폐기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압수물 위탁 보관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압수물 서약서 제출 받도록 조치(통보)

[5-1) 공용차량 안전대책 이행 미흡 (통보)

- (판단기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한다고 규정
 - 또한, 해양경찰청에서는 「공용차량 안전운전 대책(‘23.10.23.)」을 마련하여 공용차량 이용 시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종합감사 기간 중 서귀포해양경찰서 공무용 차량 안전운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림-3]와 같이 외관상 기관 특성이 표시되지 않는 업무용 차량에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공용차량 내부에는 ‘이용자 안전운전 수칙’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그림-3] 공용차량 공무수행 중 미표시 및 안전운전 수칙 미부착 차량

타 경찰서 부착현황	외관상 기관 특성이 표시되지 않는 공용차량 ‘공무수행 중’ 미표기 현황		
			
타 경찰서 부착현황	공용차량 내부 안전수칙 미부착 현황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감사기간중 현장 확인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공무용 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수립(통보)

[5-2) 경비합정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준 미준수 (개선)

- (판단기준) 「정비편람」 제2편. 장비관리 제5장 5-9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준에 따라 구난 장비품인 팽창식 구명뗏목의 점검 정비기준을 정하여 해난 시 인명의 안전을 기하고 장비의 수명 연장의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 점검 주기는 2년마다 1회 실시 및 개방검사는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외주정비를 통해 점검을 이행하여야하고 구명뗏목의 점검이 완료되면 정비편람 별지 제30, 31호 서식에 의한 정비기록을 작성하여 합정에 보관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합정의 구명뗏목 개방검사 등 정기 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12]과 같이 경비합정 6척에서 구명뗏목의 정기 점검 및 개방검사 기한이 도래하였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표-12] 경비합정 계획장비 구명뗏목 정비기한 초과 현황

연번	합정명	구명뗏목 형식	제조년월	수량	최종검사일	검사만료일	전 검사처
1	□□합	RAFT-A-25	2015. 10.	9	2022.5.	2024. 5.	*****
		SG-SV-25	2023. 3.	1	2023. 3	2026. 3.	****
2	■■합	SG-SV-25	2002. 4.	6	2022. 11.	2024.11	*****
		SG-SV-10		2			
3	△△합	SG-SV-25	2005. 4.	6	2023. 11.	2025. 11.	*****
		SG-SV-10		2			
4	▽▽합	SG-SV-25	2020. 10.	1	2024. 4.	2026. 4.	*****
		SG-SV-27		1			
5	●●정	SG-SV-15	2019. 01.	1	2024. 5.	2026. 5.	*****
6	■□정	HNH-A10	2013. 10.	1	2023. 8.	2025. 8.	*****

자료: 서귀포해양경찰서 감사기간중 현장 확인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경비함정 계획정비 수리 목록에 구멍뚫목 정기검사 반영 여부 사전확인 및 필요시 예산 및 정비사항 사전요청 등 경비함정의 구멍뚫목 개방검사가 적기에 시행되도록 개선방안 마련(개선)

[6-1)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 이력 관리 미흡 (권고)]

- (판단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의2제2항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 대원에게는 해양자율방제대 제도, 해양오염방제 장비·자재사용법, 보건 및 안전교육, 그 밖에 대원으로써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장은 해양오염방제 활동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임기중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추가 실시할 수 있고,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적을 대원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
- (문 제 점)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 이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간 1인 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실적 저조 및 2024년도에는 대원별 교육 이수 및 훈련 참여 실적, 방제작업 및 정화 활동 등의 참여 실적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개인별 활동 기록부 없이 공문상 참여 인원만 기록

▶ (조치사항)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권고)